

“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



한국건설자원협회

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

(경유)

참 조

제 목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이행실태 점검 안내



1. 최근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물분사 설비 설치 기준*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임과 같이 각 지자체에 이행실태점검('22. 12월 ~ '23.3월)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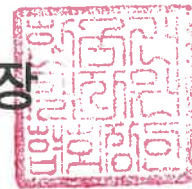
* 물분사설비 설치 기준 : 살수설비는 배출시설의 개방부(주로 투입구)를 미스트 형태로 수막을 형성하여 완전 도포할 수 있도록 분사(노즐 등 동결 예방조치 포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준 : 파쇄·분쇄시설과 물분사설비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 물분사 수동 조작 방지

2. 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회원사에서는 각 지자체의 이행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환경부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 개선방안 알림 1부. 끝.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담당 이준영 팀장 이형준 부장 나철성 본부장 이원표 사무총장 안연광 회장 박하준

협조자

시행 기술지원 - 640 호 (2022.12.28) 접수

우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뒀로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 www.koras.org

전화 02-3476-7787 전송 02-3476-8464 /koras05@koras.org / 공개

[붙임]



환경부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 개선방안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5066(2022.11.14.)호 관련입니다.
2. 습식시설의 대기배출사업장 신고와 관련하여 마련한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방안」('21.11월)의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파악된 일부 문제사항에 대한 추가 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 개선방안 1부.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대기정책과장), 부산광역시(환경정책과장), 대구광역시(기후대기과장), 인천광역시(대기보전과장), 광주광역시(대기보전과장), 대전광역시(환경관리과장),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장), 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전라남도등부지연본부장(환경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태환경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이한은 수석전문관 임홍묵 과장 2022.12.14. 모흥진

협조처

시행 대기관리과-5531 (2022.12.14) 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6906 팩스번호 044-201-8915 / inco227@me.go.kr / 더국민 공개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 개선방안

□ 추진 배경

-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방안*(참고 1)」(21.11월) 추진 상황 점검(22.7월~)을 통해 파악된 일부 문제점에 대한 추가 관리방안 마련

* 습식 파쇄·분쇄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와 관련 업계 건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사물인터넷 설치 등) 추진

□ 문제점

- 방지사설 면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독려 필요

- 살수설비 운영이 사업장별 상이해 표준기준 마련 필요

- 물분사 설비 부착 위치와 물 사용량이 상이하며, 주요 공정별로 물 분사를 수동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

- (미흡사례) 동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물분사가 되지 않음



- (우수사례) 분사노즐 등 살수 설비 보강



□ 개선방안

◆ **물분사설비 설치 기준(설치위치, 분사방법 등)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준(물분사설비 수동조작 제한) 강화**

○ 물분사설비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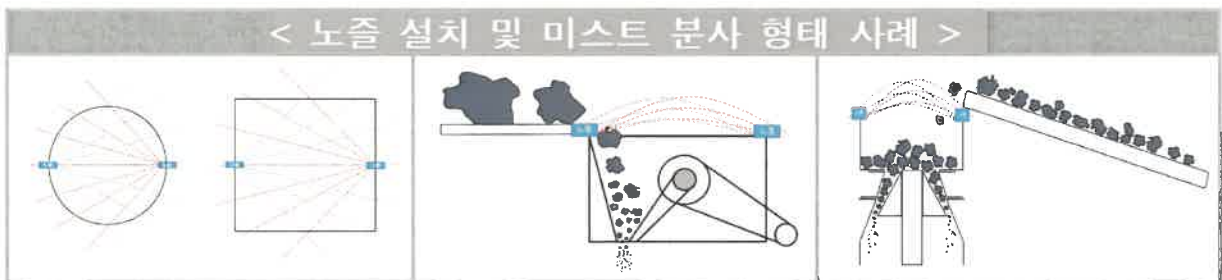
- (관리방향)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된 **파쇄·분쇄시설(조콘 크러셔)**에 **방지시설 설치 효과에 상응**하는 물분사설비 설치

* 물분사설비 등 시설 미흡시 방지시설 설치면제 취소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해야 함(대기법 제26조제2항제2호)

- (세부기준) 살수설비는 배출시설의 개방부(주로 투입구)를 **미스트*** 형태로 수막을 형성하여 **완전 도포**할 수 있도록 분사하여야 함 (노즐 등 동결 예방조치 포함)

* (예시) 크기: 10 μ m~50 μ m, PM-10, TSP가 97% 차지(20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준

- **파쇄·분쇄시설(배출시설)**과 **물분사설비(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전류계)를 각각 부착하여 **물분사 수동 조작** 방지

□ 협조 요청 사항

○ 습식 파쇄·분쇄시설 중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이행실태 점검('22.12월 ~'23.3월, 지자체)

* 물분사설비 미흡 사업장 개선조치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설치 계도, 미이행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 취소

□ 추진 배경

- '21.12월까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 예정이었던 습식 파쇄·분쇄시설 업계에서 업계 특성에 맞는 규제방식 검토 건의

□ 추진 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5.2 공포, '20.1.1 시행)
 - 습식을 제외하는 단서조항 삭제 및 파쇄시설 추가, 해당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신고는 1년 유예('21.12월말)
 - * (강화사유) 물분사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면제 받으나, 작업 중 향시 물분사 유무 등 확인 곤란 등 실질적 관리 어려움
- 공정특성 등에 부적합한 과도한 규제로 재개정 건의('21.6월)

◆ ①상시 물분사로 분진발생 최소화, ②작업시설 밀폐 및 방지시설 설치가 사실상 곤란, ③대기배출시설 편입 후 자가측정* 불가 등

*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측정공 설치에 과다비용 소요(7천만원) 또는 기술적 곤란

□ 주요 내용

- 습식 분쇄·분쇄 시설 관리 방안 마련('21.11월)
 -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되, 물분사시설 설치 및 IoT 부착 시설은 방지시설 설치·자가측정 면제(지자체가 사업장 위치·민원 등 고려)

◆ (방지시설 면제) 습식설비(물분사)를 갖추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IoT 측정기기 부착시 방지시설 면제(대기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90%) 지원('22년)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 제정('21.11월)

◆ (자가측정 면제) 습식설비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은 자가측정 면제 규정 적용(대기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 단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21.12월)

□ 관련 규정

-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능한 경우

□ 주요 내용

① 방지시설 설치 면제기준

- 객관적인 문헌, 시험분석자료로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능한 경우
 - * 살수설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을 허가증에 기재

②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면제 사유

- 방지시설 설치면제시 1회/1년 이상의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를 설치토록 함
 -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면제
 - * 자가측정 면제 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 단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름